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93년 12월 17일
-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93년 12월 17일
- 라. 상정일자 : 93년 12월 21일(제5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김충신)

가. 제안이유

- 중앙도서관 직제가 내부부지기 12200-621(93. 12. 7) 및 지방 12200-3152(93. 12. 9)호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사업소 명칭 변경)

○ 도서관 명칭

- 신축도서관 →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열람석 1,005석)
- 기존 시립도서관 →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열람석 712석)

○ 직 제

- 1사업소 2계 1분관 25명
- ┌ 기존 : 1사업 1계 15명
- └ 승인 : 1계 1분관 10명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안

의안번호	227
의결 년월일	93. 12. 24 (제25회)

제출년월일 : 1993. 12. 17

제출자 : 부천시장

1. 개정구분 : 부분개정

2. 제안사유

- 중앙도서관 직제가 내부부지기 12200-621(93. 12. 7) 및 지방 12200-3152(93. 12. 9)호로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도서관 명칭
 - 신축도서관 →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열람석 1,005석)
 - 기존 시립도서관 →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 심곡분관 (열람석 712석)
- 직제
 - 1사업소 2개 1분관 25명
 - ┌ 기존 : 1사업소 1개 15명
 - └ 승인 : 1개 1분관 10명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법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도 서 관 의 명 칭 및 위 치

구 분	명 칭	위 치
본 관	부 천 시 시 립 중 앙 도 서 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3-14, 15 번지
분 관	부천시시립중앙도서관심곡분관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산7-18 번지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93. 11. 24
 나. 제 안 자 : 부 천 시 장
 다. 회부일자 : 93. 11. 26
 라. 상정일자 : 93. 12. 18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설명자 : 산업과장
 나. 제안사유
- 부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 부천시 임차농의 보호와 유희농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다. 주요골자
- 지역별 농지임차료의 상한 결정

3. 질의 및 답변내용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오정동 지역을 보면, 임차료가 300% 이상 상향조정된 이유	○ 오정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현 임차료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한 것임.
○ 임차료가 인상 조정되는 것은 몇 년 만인가?	○ 90년도에 개정되었고 3년만에 상향조정되는 것임.